

[] 방사성동위원소 [] 방사선발생장치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 6일	
신 고 인	상 호		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 소				전화번호		
	대 표 자				생년월일		
	사업소명						
	사업장소						
	담당부서				담당자		
	허가번호						
	발행일자						
	방사선 안전 관리자 성명				면허종류 및 번호		
신고내용	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						
	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경우 명칭 및 고유 제작번호						
	방사선발생장치 종류·용량 및 대수						
	사용목적						
	사용장소						
	사용기간						

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(방사성동위원소·방사선발생장치)의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

월

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각 1부 2.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1부 3.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각 1부 4.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5.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6.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(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)					수수료 없음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검토 및 통보	→	신고확인증 발급	→	신고확인증 수령
신고인		원자력안전위원회		원자력안전위원회		원자력안전위원회		신고인